

검토보고서

2022. 11. 30.(수)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김동원)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김동원)

1. 검토안건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2. 11. 15.
- 회부일 : 2022. 11. 18.(의안번호 : 22-120)

3. 제출이유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사무를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 를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고, 재계약 관련 절차 진행 중에 수탁기관에서 재계약 포기 의사를 제출함에 따라 재위탁(공개 모집)에 관하여 변경 동의를 구하고자 함

※ 현 수탁법인 (학)명지전문대학 내부사정으로 재계약 포기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2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 필요성

-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관리의 효율성 및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활성화 제고

5) 위탁시설 현황

구 분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	마포구 희우정로 77 상가동 1층(망원동)	
규모	226.23m ²	
시설 설비	사무실(1), 상담대기실(1), 집단상담실(1), 개인상담실(3), 교육실(1)	
센터전경 및 위치		

6) 소요예산 : 총994,500천원(국비 10%, 시비 22%, 구비 68%)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합 계	994,500	807,000	76,860	110,640	
2023년	494,250	400,500	38,430	55,320	인건비 상승률 반영
2024년	500,250	406,500	38,430	55,320	"

* 인건비 산정 : 센터장1명, 팀장2명, 팀원3명(서울시 청소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운영비 내역 :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운영비 등

<참고>

(단위: 천원)

구 분	합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비 고
2022년	484,000	385,250	38,430	60,320	

다. 추진일정

- '22. 11. 7.~11. 28. : 민간위탁운영체 선정방침 수립 및 공개모집
- '22. 11. 29.~12. 16.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개최
- '22. 12. 21. : 위·수탁 협약 체결

5. 관계법령

가. 『지방자치법』 제13조 제1항 및 제117조 제3항

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제4항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6.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이 마포구의회 제25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가결되었으나, 현수탁기관인 (학)명지전문대학의 재계약 포기로 위탁방법 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 현 마포구청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사무는 위탁방법 변경 따라 새로운 업체를 공개모집하여 진행되는 사항으로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설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위탁기간은 당초 3년에서 2년,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 부합된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본 재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마포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5.6.>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5.6.>